

서 면 답 변 서

질의위원	우 강호 위원	소 속	평 창 군 의 회
답 변 자	평 창 군 수 (문화관광과장)	일 자	질의 : 2000. 12. 4 답변 : 2000. 12. 5
회 의	제82회 평창군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감사 1일차)		
<input type="checkbox"/> 질의요지 ○ 국립공원재조정에 따른 타 기관과 협조추진 실적은?			
<input type="checkbox"/> 답변요지 ○ 국립공원 재조정(해제 및 용도지구 조정)을 위한 추진실적은 김진석의원이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로 요구하여 문화관광과 행정사무감사자료 목록번호22번으로 제출되었으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추진배경 1. 1967년 최초로 국립공원제도가 도입되면서 국가재정지원등 개발기대에 따라 사유재산이 공원구역에 과다 지정 2. 종전의 자연공원법에는 군사상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원구역 조정이 불가능하였으나, '95.12.30 자연공원법 개정으로 10년주기의 공원계획 타당성조정을 검토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추진상황 및 실적 1. '97. 1.20 자연공원구역 제외검토의견서 제출 2. '97. 4.26 국립공원구역 제척기초자료 및 의견제출 3. '97. 5.20 국립공원구역 제척을 위한 의견제출 4. '97.11.11 공원구역 타당성조사 관련 공원내 주민의견 청취 - 조사주관 : 한국지방행정연구원(내무부 위탁) - 조사내용 : 공원구역 관련 자치단체 및 주민과 면담실시 및 현지답사 5. '98. 1. ~ 6. 국립공원계획 타당성 조사 - 조사내용 : 각 공원별 용도지구, 공원시설 등에 대한 타당성 검토 - 조사(용역)기간 : 360일('97.12 ~ '98.12) - 용역회사 : 동양개발기술공사			

6. '98. 8.28 공원구역 조정 및 완화조치에 대한 주민요구건의서 송부
7. '98. 10 국립공원관리실태에 대한 지역주민 대표와 합동조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주관)
8. '98.10.17 국립공원 타당성조사기준(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참석
9. '98. 10. 오대산국립공원내 제척대상지구 조사실시 및 제척요청
- 2개면(진부·도암면) 1,250필지 29,500,732㎡
(대지:105필지 41,188㎡, 농지: 857필지 2,328,435㎡, 기타: 288필지 27,131,109㎡)
10. '98.12. 공원제척대상지역내 주민거주현황 조사보고
11. '98.12.22 국립공원 규제해제를 위한 주민궐기대회(300명)
12. '99. 5.12 자연공원법규제완화를 위한 지역주민생존권 사수를 위한 전국국립공원지역주민 궐기대회(과천 정부청사) 참석시 지원
13. 2000. 2.25. 국립공원 제척대상지구 추진현황 보고(자체)
14. 2000. 2.26. 도지사 중앙부처 방문·건의
15. 2000. 3. 3. 도지사 업무보고시 건의
16. 2000. 3.13. 국립공원구역조정사업 조정안 마련을 위한 자료 제출
17. 2000. 4.18. 국립공원지역 경기활성화를 위한 방안 제출
18. 2000. 8. 4. 공원조정계획과 관련한 언론사(강원일보, 환경일보)기사제공
19. 국립공원조정계획안에 대한 군 최종의견 수립
- 2000. 8.16. 강원도(환경부) 제출, 군의회·오대산지역대책위 자료 제공
- 2000. 8.22. 지역구 국회의원 방문·건의
- ※ 조정요구안
용평면 노동리 계방산지구 신규편입(4.153km²) 반대
해제요구(20.471km²) : 간평·내동산·병안지역 11.427, 황계(삼정평) 9.044
용도지구 조정(동산?간평 민박촌) : 자연취락 0.225km²⇒ 밀집취락 0.440km²
자연환경지구내 행위완화 요구 : 척천·병내·차항지구 24세대 89명(독립가옥)
20. 2000.9.29. 공원구역조정기준에대한 환경부·총괄협의회 현지실사시 건의
21. 2000.11. 2. 공원구역 조정에 따른 2차의견 제출 (변경 없음)
22. 2000.11.16. 공원구역 조정을 위한 지역협의회 개최 협의결과
간평·내동산·병안지구
군 요구(안) : 임야를 포함한 11.427km² 공원구역 해제 요구
지역협의회 협의 : 임야를 제외한 농경지 2.369km² 해제 의결

황계 삼정평지구

군 요구(안) : 9.044km² 해제 요구

지역협의회 협의 : 해제 대상지로 적합하지 않아 기존대로 존치 의결

동산?간평 민박촌 용도지구 조정

군 요구(안) : 자연취락 0.225km² ⇒ 밀집취락 0.440km²

지역협의회 협의 : 군 요구(안) 수용

용평면 노동리 계방산지구 신규편입(4.153km²)

군 요구(안) : 편입 반대

지역협의회 협의 : 간평지구 해제요구 관철을 위해 사유지를 제외한 면적만
편입 의결

2000. 2. 26 강원도지사
중앙부처 방문시 건의사항

懸 案 事 項

1. 진부체육공원 조성
2. 타당성조사에 따른 오대산 국립공원의 면적조정(축소)

平 昌 郡

妥當性調査에 따른 五臺山 國立公園의 面積調整(縮小)

□ 妥當性調査 背景

<제도적 측면>

- 종전의 자연공원법에는 군사상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원구역 조정이 불가능하였으나
- '95. 12. 30 자연공원법 개정으로 10년 주기의 공원계획 타당성조정을 검토할 수 있는 근거 마련(자연공원법 제13조제2항)

<공원지정 측면>

- 1967년 최초로 국립공원 제도가 도입되면서 국가재정 지원 등 개발기대에 따라 공원구역 과다 지정
- 사유재산이 과다 편입되었음에도 소유자들의 사전공람, 의견 청취 절차나 취락·농경지 등에 대한 이주·매입조치 결여

<공원관리 측면>

- 공원구역안에서 대대로 살아온 거주민이 생활터전에 대한 재산권 행사시 제약
- 공원구역내 개발제한에 따른 취락의 노후 등으로 오히려 자연경관 저해
- 야생동물 서식, 희귀식물 식생 등을 고려하지 않은 자연환경 보존지구의 설정 및 집단시설지구 장기간 미개발로 민원야기

"인간 최적의 생활환경 HAPPY700경정"

평 창 군

우 210-800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하리 210-2 / 전화(0374) 330-2542,2399 / 전송(0374)330-2592
 문화관광과(본청4층) 과장 : 신만희 관광담당: 김진영 담당자 : 김대식(h700kds@dreamwiz.com)

문서번호 13640- 34
 시행일자 2000. 3. 15. (년)
 공개여부 ()

수신 강원도지사
 참조 관광개발과장

보존기간	년	군 수	
공개여부		1	
부군수			
과 장	전 결	관광담당 김진영	
기 안	김대식		
심사자		심사일	협조

제목 국립공원 구역조정관련 자료 제출

1. 관개 13640-96(2000. 3.10)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에 의한 국립공원구역조정사업 조정안 마련을 위한 요청자료(국립공원과 접한 공원의 지역의 국토이용관리법상 용도지역)를 불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불임 국토이용관리법상 용도지역 표시도면 2부. 끝.

평 창 군 수

"인간 최적의 생활환경 HAPPY700명장"

평 창 군

우 210-800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하리 210-2 / 전화(0374) 330-2541-3 / 전송(0374)330-2592
 처리부서 : 문화관광과(본청4층) 과장 : 김근수 관광담당: 김진영 담당자 : 김대식

문서번호 문관136400- *svf*
 시행일자 2000. 4. 13 (년)
 공개여부 ()
 수신 강원도지사
 참조 관광개발과장

보존기간	년	군 수	
공개여부		<i>1</i>	
부군수	전 결		
과 장	<i>김근수</i>	관광담당 <i>김진영</i>	
기 안	<i>김대식</i>	협조	
심사자		심사일	2000. 4. 13

제목 오대산국립공원지역 경기활성화 방안 관련자료 제출

1. 관개 13640-118(2000. 3. 22)호와 관련입니다.
2. 월정사 집단시설지구를 비롯한 오대산국립공원지역 경기활성화 방안을 위한 관련자료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 오대산국립공원지역 경기활성화 계획 1부. 끝.


평 창 군 수

"인간 최적의 생활환경 HAPPY700평장"

평 창 군

우 210-800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하리 210-2 / 전화(0374) 330-2542,2399 / 전송(0374)330-2592
 문화관광과(본청4층) 과장 : 김근수 관광담당: 김진영 담당자 : 김대식(samsamhe@shinbire.com)

문서번호 문관13640-1865
 시행일자 2000. 7. 24 (년)
 공개여부 ()
 수신 받는곳참조
 참조

보존기간	년	군 수
공개여부		1
부군수		
과 장	전 결	관광담당 김대식
기 안	김대식	
심사자		
		합조
		심사일 2000. 7. 24

제목 국립공원계획변경(안) 통보

1. 환경부의 국립공원계획변경(안)과 관련하여, 추진일정과 변경(안)을 통보하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2. 도암면장은 주민들에게 공람토록 하고 의견이 있으면 2000. 7.31까지 제출하기 바랍니다.

- 가. 주민의견 수렴 : 7월
- 나. 공청회 개최 및 조정안 확정 : 8~9월
- 다. 공원계획변경 절차 이행 : 10~11월
- 라. 공원위원회심의 및 공원계획변경 결정고시 : 12월

붙임 : 오대산국립공원계획 변경(안) 1부. 끝.

평 창 군 수

우선처 : 도암면장, 평창국립공원관리소장, 삼양추진, 월전사

"HAPPY700 살기좋은 평창"

평 창 군

우232-800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하리 210-2 / 전화(0374)330-2543, 전 송330-2592
처리부서 : 문화관광과(본청4층)과장:김근수 관광담당:김진영 담당자: 김대식

문서번호 문관 91700 - 2095
시행일자 2000. 8. 16
경유

받음 강원도지사
참조 관광개발과장

취 급		군 수
보 존	년	김진영
부군수		
과 장	전 결	담당 김진영
기 안		

제목 오대산국립공원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출

1. 관개 13640-337(2000.7.7)호의 관련입니다.
2. 오대산국립공원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을 덧붙임과 같이 제출하오니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공원내 주민불편을 해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임 : 오대산국립공원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 1부. 끝

평 창 군 수

"HAPPY700 살기좋은 평창"

평창군

우232-800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하리 210-2 / 전화(0374)330-2543.전송330-2592
처리부서 : 문화관광과(본청4층)과장:김근수 관광담당:김진영 담당자: 김대식

문서번호 문관 91700 - 217
시행일자 2000. 8. 17
경유

받음 받는곳 참조.
참조

취급		군수
보존	년	
부군수		김진영
과장	김진영	
기안	김진영	담당

제목 오대산국립공원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출의견 송부

1. 환경부 국립공원계획 변경안 관련임.
2. 오대산국립공원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우리군에서 제출한 의견을 덧붙임과 같이 송부하니 공원내 주민들의 생활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랍니다.

덧붙임 : 오대산국립공원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출의견 1부. 끝

평창군수

받는곳 : 도(6,7,8)

"HAPPY700 살기좋은 평창"

평 창 군

우232-800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하리 210-2 / 전화(0374)330-2543.전송330-2592
처리부서 : 문화관광과(본청4층)과장:김근수 관광담당:김진영 담당자: 김대식

문서번호 문관 91700 - 2096

시행일자 2000. 8. 16

경유

(제1안)

발음 평창군의회의장

참조 의회사무과장

취 급		군 수
보 존	년	김대식
부군수		
과 장	전 결	담당
기 안	김진영	

제목 오대산국립공원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출의견 송부

1. 환경부 국립공원계획 변경안 관련입니다.
2. 오대산국립공원계획 변경안에 대한 우리군에서 제출한 의견을 덧붙임과 같이 요약하여 송부하오니 공원내 주민들의 의견대로 반영되어 생활불편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임 : 오대산국립공원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출의견 요약서 1부. 끝

평 창 군 수

김용학 의원님께

국립공원조정과 관련하여 참고 자료를 덧붙임과 같이 보내 드리오니
공원내 지역 주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에서는 개정된 법령에서 보는바와 같이 국립공원 지정시 개발 위주
에서 현재는 보전이라고 용어를 개정한 것을 보더라도

당초 지정시에는 주민들이 공원에 포함되면 이득을 볼 수 있다는 기대감
에서 반대를 하지 않았으나, 오히려 개발보다는 행위제한으로 25년이라는
기간동안 많은 불편을 겪어 왔습니다.

1995 12.30 법령 개정의 취지를 보면 일부 불합리하게 시행되던 규제를
개선함으로써 공원안에 거주하는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공원관리의 효
율성을 도모한다고 하면서

1. 취락지구를 자연취락지구와 밀집취락지구로 세분화하여 허용행위를
대폭 완화하였지만, 오히려 현취락지구 0.336km²를 0.225km²로 축소하므
로써 혜택을 보는 주민은 없습니다.
2. 공원지정 이전부터 집단농경지로 농업을 위주로 하는 지역은 제척하여
도 현 관계법령상 개발제한으로 인해 자연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3. 취락지구내는 행위를 완화하면서 자연환경지구내의 행위를 제한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나며, 최소한 민박이라도 할 수 있도록 주택 개보
수 면적을 종전 취락지구 수준으로 완화하여야 합니다.(자연공원법시행
규칙 개정 사항)

2000. 8. 22

- 덧붙임 : 1. 법령개정 취지문 1부
2. 강원도 관련문서 1부 끝.

평창군청 문화관광과 관광담당
김진영
전화 330-2544, 019-251-2497

"인간 최적의 생활환경 HAPPY700평창"

평 창 군

우 210-800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하리 210-2 / 전화(0374) 330-2541~3 / 전송(0374)330-2592
 문화관광과(본청4층) 과장 : 김근수 관광담당: 김진영 담당자 : 김대식(samsamhe@dreamwiz.com)

문서번호 문관13640- 2414
 시행일자 2000. 11. 2. (년)

수신 강원도지사
 참조 관광개발과장

보존기간	년	군 수	
공개여부		1	
부군수	전 결		
과 장	김근수	관광담당 출장	
기 안	경대국	협조	
심사자		심사일	

제목 국립공원 구역조정에 따른 2차의견 제출

1. 관개13640-608(2000.10.11)호와 관련입니다.
2. 국립공원 구역조정을 위한 우리군 지역의 의견을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 붙임 1. 국립공원구역조정의견 1부
 2. 관계도면 1부. 끝.

평 창 군 수